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7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1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알피(RP)(박정규)

나. 전화번호 : 053-422-3003

2. 명칭 : 무인원격제어 노면표시 로봇을 이용한 도장공법(알봇공법)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기타 건설기계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5축 제어 헤드(X축, A축, Y축, Z축, R축)를 사용하여 분사헤드를 6개 방향(전후, 좌우, 상하)으로 이동·회전시키면서 노면표시를 도색하는 기술로, 자체제작 소프트웨어인 알봇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노면표시를 제작하고, 편집하며, 알봇과 차선의 이격거리를 자동보정하여 지정된 위치와 지정한 방향으로 노면표시의 좌표를 보정하고, 알봇프로그램과 무선리모컨으로 알봇을 무인원격으로 제어하여 노면표시를 도색하는 자동화 도장공법이다.

<범위>

노면표시 이미지의 제작·편집, 이미지의 좌표 변환 및 좌표 보정 기능을 수행하는 알봇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사헤드를 5축으로 제어하며, 무선리모컨과 제어컴퓨터로 알봇을 무인 원격 제어하여 노면표시를 도색하는 로봇 도장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